

제 3 장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3.1 종합결론

3.2 안전점검시 미조치 사항

3.3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제 3 장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3.1 종합결론

◎ 『울릉도 일주도로2 건설공사』현장의 과업대상 구조물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시행령 제100조, 제101조, 시행규칙 제59조, 제60조”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18호』에 따라 실시하는 용역으로써 준공(임시사용 포함)하기 직전에 정기안전점검과 초기점검 등을 수행하고 안전점검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종합보고서로 작성하였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와 관련하여 본 시설물은 2종시설물에 해당된다.

◎ 본 시설물에 대하여 구조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초기치 작성이 시행되었으며, 초기점검 조사결과 외관조사, 상세조사 등의 종합적인 결과를 토대로 판단할 때 상태평가 결과, A등급으로 분석되어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본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2종 시설물에 해당되므로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구조물의 사용성 및 내구성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2 안전점검시 미조치 사항

◎ 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결과,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칠만한 중대한 결함 발생은 없는 상태이며, 조사된 손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수를 실시하였다. 이후, 시설물에 대해 주기적인 주의관찰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이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유지관리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3.3 유지관리를 위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준공 후 유지관리방안으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본 보고서를 기초로 삼아 주기적인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등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초기점검시 보수된 손상 및 신규 손상 발생 여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성능평가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B, C등급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 E등급	1년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부터 최초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 사용승인 포함)을 기준으로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그 날(완료일)을 기준으로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주기를 정한다. 또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완료일부터 6개월 전 이내에 그 실시주기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최초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 최초로 실시하는 성능평가는 성능평가 대상시설물 중 제1종시설물의 경우에는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 제2종시설물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때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성능평가 대상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에 실시한다.

다만, 증축, 개축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공사 중이거나 철거예정인 시설물로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안전점검등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